



농림축산식품부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「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」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알림

1. 관련: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
2. 「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」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, 의견이 있을 경우 아래 양식으로 작성하시어 '24.4.21.(일)까지 우리부(방역정책과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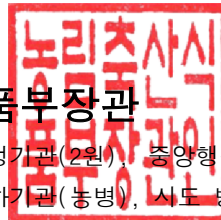
개정안	수정안	검토의견

3. 아울러 행정예고문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(www.mafra.go.kr, 국민소통 → 법령 정보 → 입법·행정예고)에도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, 동 기간 내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.

붙임 행정예고 공고문 1부. 끝.

농림축산식품부장관

수신자 중앙행정기관(19부), 중앙행정기관(19청), 중앙행정기관(2원), 중앙행정기관(4처), 중앙행정기관(7위원회), 농림축산식품부전체과, 소속기관(농을), 산하기관(농병), 시도 방역부서, 관련 생산자단체



주무관 **유영민** 서기관 **박경일** 방역정책과장 **이동식** 전결 2024. 4. 2.

협조자

시행 방역정책과-1946 (2024. 4. 2.) 접수

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, 농림축산식품부 (어진동) / <http://www.mafra.go.kr>

전화번호 044-201-2521 팩스번호 044-868-0628 / kiojllh@korea.kr / 대한민국 공개